KiRi 리포트 2020.4.13.
글로벌 이슈

미국, 코로나19 관련 퇴직연금 긴급 인출 허용

김진억 수석담당역

요약

미 의회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금융시장과 경제가 타격을 받자, 광범위한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및 경제보장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이하, 'CARES법'이라 함)을 통과시킴. 동 법은 긴급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 외에 퇴직연금의 긴급 인출을 허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에 따라 퇴직소득을 유동화할 수 있는 수단이 강화됨. 그러나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중간 인출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미 상원은 3월 25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을 승인했으며, 동 법안은 3월 27일 하원에서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법제화됨

- 미 의회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경제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3가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중 하나가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및 경제보장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이하, 'CARES법'이라 함)[1]임
  - 동 법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개인당 1,200달러와 자녀당 500달러의 긴급 자금(리베이트 수표를 발행)을 지원하고 고용주에 대한 급여세를 정지시킬 것임
  - 또한 이는 프리랜서나 임시직 근로자 등으로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2조 1천억 달러 규모의 1930년대 뉴딜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기부양 법임

CARES법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자신의 퇴직연금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긴급 인출하는 것을 허용함

- CARES법에 따라 59.5세 미만의 종업원들은 통상적인 10%의 조기 인출 벌금 없이 퇴직연금제도인 401(k)과 403(b)에서 긴급 자금을 인출[2]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개인퇴직계좌(IRA)에도 적용될 것임[3]

1) JDSUPRA(2020. 4. 1), "The CARES Act Effect On Retirement Plans"
2) Sec. 2202(a)

- 미국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보통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돈을 인출하면, 59.5세 미만일 경우,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함께 10%의 벌금을 물게 되나 이번 구제안에 의해 벌금이 면제됨

- 또한 긴급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3년에 걸쳐 분납[4]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긴급 인출한 금액을 적격 퇴직연금계좌로 상환(보충)할 수도 있음
- 이러한 긴급 인출은 코로나19과 관련하여 본인이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을 받았거나, 배우자 또는 피부양자가 코로나19 진단을 받았거나, 격리, 해고 또는 일시 해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의해 취해질 수 있음

동 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퇴직 소득의 일부를 유동화하여 긴급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해 질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중간 인출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5]

- 금번 조치로 퇴직연금 긴급 인출이 가능하더라도 여전히 긴급 인출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3년간에 걸쳐 세금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함
- 본인이 가입된 퇴직연금제도의 규정에 따라 긴급 인출 이전에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먼저 사용해야 할 수도 있음
  - 일부 직장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보통 적립금의 50% 또는 5만 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으며, CARES법은 이를 두 배인 10만 달러로 증액[6]함
  - 보통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실직하면 대출금은 인출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긴급 인출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을 권고하는데, 만약 퇴직연금 긴급 인출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 미국 증시가 최악인 상태[7]임을 고려해야 함
  - 또한 다른 비상 자금원 즉, 만약 주택담보 대출의 여유가 있다면 이를 비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KiRi

3) Fidelity(2020. 4. 3), "9 things to know about the COVID-19 stimulus bills"
4) 2019년 연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2020년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연기됨
5) CNBC(2020. 3. 23), "Congress will let you take $100,000 from your 401(k). Should you?"
6) Sec. 2202(b)
7)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은 401(k)와 같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위주로 성장해 왔으나, 금번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미국 주식시장의 급락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도 상당히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상됨